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(2단계)건설공사 1공구]

- 점검일시 : 2021.12.23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1-1) 기존 하수암거 상부 절단 완료 구간 시점 (작업자 진입로) 및 종점부에 수직개구부가 발생되어 작업자 이동시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을 추가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라며,
- 1-2) 하수박스 내부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밀폐작업에 준하여 출입을 통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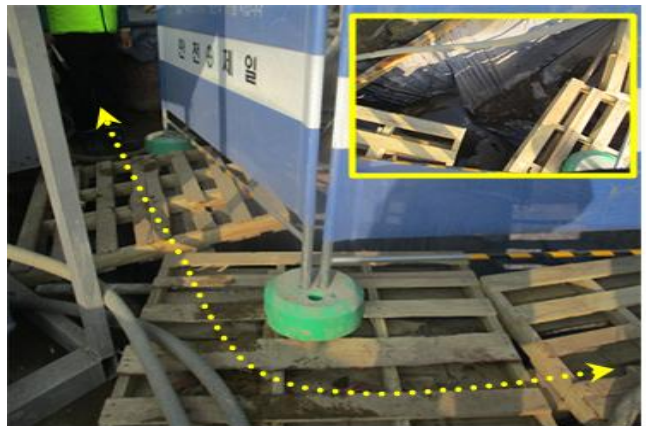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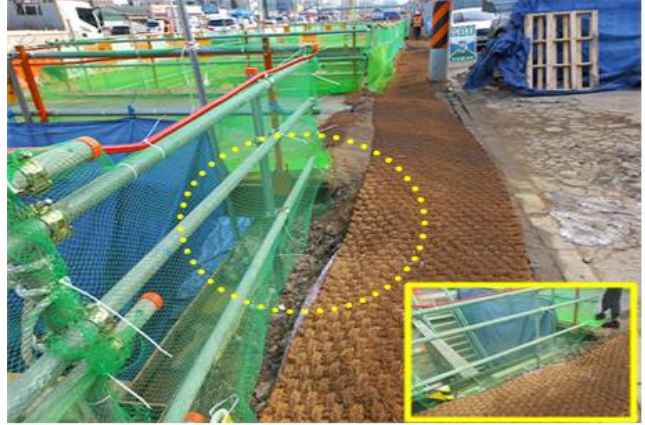
- 2) 인천방향 그라우팅 배합기 주변에는 굴착부에 목재팔레트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작업자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조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3) 수로암거 가시설 설치구간 상부 단차발생으로 주변 보행자 안전사고 및 하부 작업자 낙하우려가 있으니 보완을 실시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4) 기존 박스암거 절단완료 구간 상부에는 시멘트 블록 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 등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하부 작업구간으로 낙하할 우려가 있으니 낙하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5-1) 인천방향 차수 그라우팅 작업구간 천공기 아웃트리거가 여건상 굴착상부에 걸쳐져 있는 목재에 지지되어 있어 작업중에 발생하는 충격 등으로 전도 우려가 있으니 즉시 보완 조치하기 바람,
 - 평탄하지 않은 지반상부에 아웃트리거 깔판을 설치하여 작업 중에 있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조



치하기 바람

- 5-2) 또한, 일부 굴착기는 흙해지장치 및 협착 금지봉 미설치된 상태로 작업중에 있으니 천공기 및 기타 건설기계 관련 조종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안전교육(사고사례 중심)을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6-1) 용접작업이 예정구간 등 화재발생우려가 있는 모든 곳에는 상황발생시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상시 비치하여 관리하기 바람,

- 6-2) 작업구간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용기의 일부 압력게이지가 망실된 상태로 확인되니 보완하기 바람

- 6-3) 전 구간 작업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

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7) 작업구간이 여러 개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작업장 출입통제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 전 작업구간에 대하여 통제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바람.

